KISO 자율규제 이행평가 보고서

2016년 총선과 인터넷 자율규제

2016.6.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배경 >

■ KISO[1]와 회원사의 자율규제 노력과 활동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자율규제 공고화 및 자율규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그에 따라, 2016년 상반기에 실시된 총선 기간의 자율규제 활동을 종합하여 공개하고자 함

<보고서의 구성>

■ 선거 관련 법령 및 자율규제 기준

- 공직선거법
- KISO 정책규정

■ 자율규제 활동 현황

- 선거기간 KISO의 자율규제 활동
- 선거기간 회원사의 자율규제 활동

1)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하 'KISO'라 표기함

Ⅰ. 선거 관련 법령 및 자율규제 기준

□ 공직선거법

o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공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게시물 관리 등
-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에 의한 인터넷 언론사·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략..)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2.2.29.>

④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9.>

(..후략..)

□ KISO 정책규정

o KISO는 2012년 2월 16일 공직선거법의 의무 사항 및 취지를 반영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율규정인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을 제정

<KISO 정책결정 주요 내용>

- 이용자 작성 게시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허위사실 등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처리함
- 선거기간 국민의 알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연관검색어, 자동완성검색어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삭제 허용
- 후보자의 인물정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정보제공 등

o 위 규정은 현행 KISO 정책규정 제4장에 포함되어 있음

정책규정 전문보기 : http://www.kiso.or.kr/정책규정

제4장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제14조(목적)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정보를 자유롭게 읽고, 듣고,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고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며, 인터넷은 이를 위한 중요한 소통 및 참여의 공간이다.
이 장은 선거정보가 유통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는 공간으로서 인터넷이 가지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검색 서비스의 제공)
회원사가 제공하는 선거관련 검색결과는 각사가 정보서비스를 위해 기술적으로 채택한 알고리즘에 따르며 선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청이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후보자정보의 제공)
① 선거기간 동안 회원사가 제공하는 후보자정보는 원칙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사용한다.
② 회원사가 인물정보와 구분하여 후보자정보를 독립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후보자 이름 등을 검색어로 하는 검색결과에서 동명이인 후보자정보를 화면에 노출하는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거구가 서로 다른 동명이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선거구 아이디 순서

2. 선거구가 같은 동명이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호 순서

제17조(검색어의 처리)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이하 '후보자 등' 이라 한다)가 권리침해를 사유로 선거관련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하여 삭제 및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응하지 아니한다.
1. 후보자
2. 예비후보자
3.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4.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한 경우에는 그 사퇴시점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직후보의 적격성 판단과 관계없이 오로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2.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증명된 게시물 등에의 접근을 조장함으로써 명예훼손의 피해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18조(게시물의 처리)
① 선거관련 게시물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5조의 처리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른다.
1.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후보자 등일 경우 회원사는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정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하여 접수단계에서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정당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후보자 등에 대한 게시물이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경우에 회원사는 핫라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처리 지침을 요청하는 등 불법 또는 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 또는 결정에 따른다.
②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따라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한 경우에도 제1항 제1호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적용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적용범위)
이 장의 정책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 선거 및 교육감 선거에 대하여 적용된다.

Ⅱ. 자율규제 활동 현황

□ 선거기간 KISO의 자율규제 활동

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인터넷 사업자 실무 세미나' 개최 ('16년 3월 10일)

o KISO 회원사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선거기간 중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를 설명하고 선거기간 중 인터넷 정보서비스 실무 사항 등 논의

- 발제 1 :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
  · 공직선거법 개관 및 인터넷 사업자 관련 조항, 관련 사례 등 설명
- 발제 2 : 선거기간 중 인터넷 사업자 게시물 관리 실무
  · 선거관리위원회 핫라인 등의 협력관계를 통한 선거기간 중 게시물 관리 방법 등 소개

- 자유토론 : 각 사업자의 선거 관련 게시물 등 처리 실무, 애로사항 공유 및 의견 교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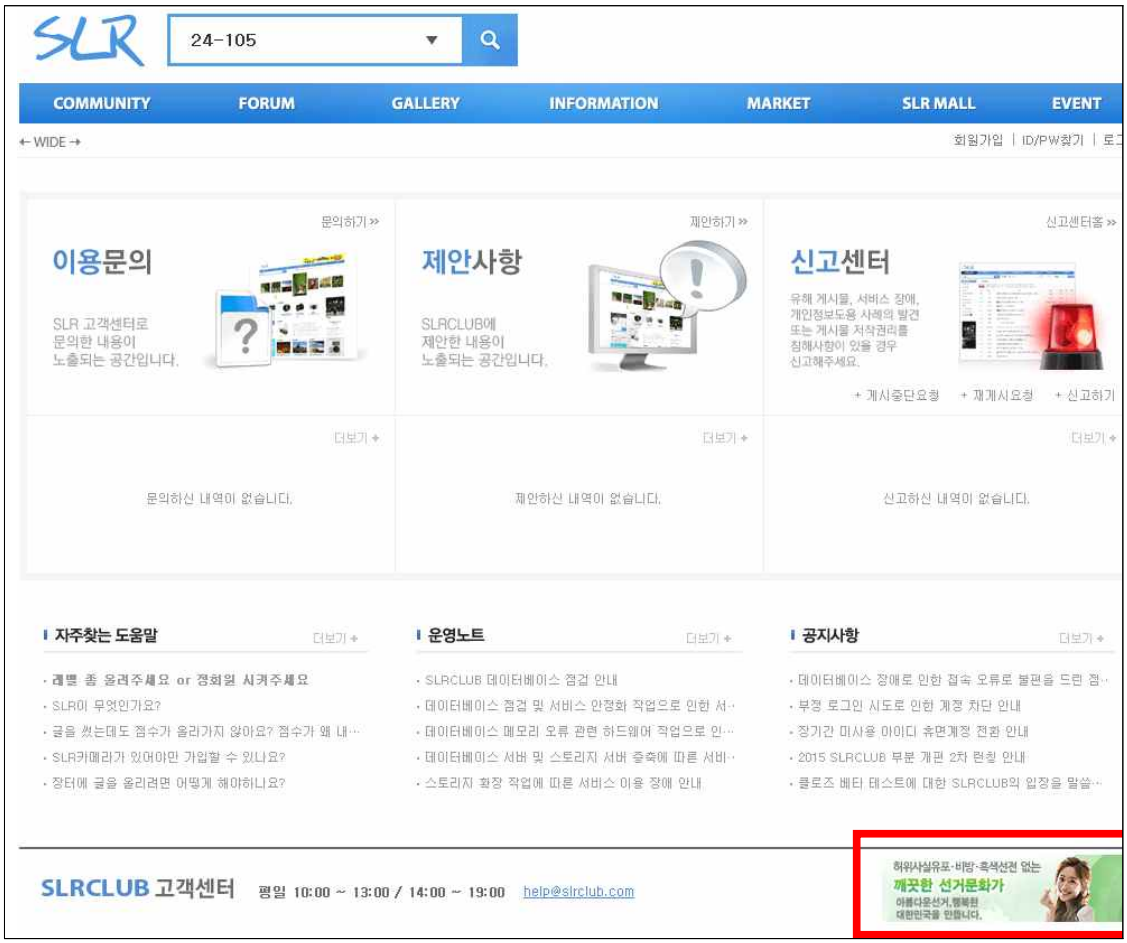


<사진 1: '공정한 선거를 위한 인터넷 사업자 실무 세미나'>

나)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한 허위사실유포 비방 예방' 배너 게시

o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청에 의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예방' 배너 게시

- 게시장소 : KISO 홈페이지 및 KISO저널 홈페이지, SLR 클럽 고객센터, 네이버, 카카오, 줌인터넷의 선거 특집 페이지 등 6곳



<사진 2 : SLR 클럽의 선거 캠페인 배너>



<사진 3: 줌인터넷의 선거 캠페인 배너>



<사진 4 : 카카오의 선거 캠페인 배너>



<사진 5 : 네이버의 선거 캠페인 배너>

□ 선거기간 회원사의 자율규제 활동

가) 네이버

o 총선 특집 서비스 제공

- 총선 관련 주요 뉴스, 여론조사, 후보자, 토론회 등 다양한 선거 정보 및 실시간 투/개표 현황 제공



< 사진 6 : 네이버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 페이지 >

- 특징

① 운영 측면

· 서비스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기사배열 원칙'을 공개하고, 별도의 자문기구인 '네이버 뉴스 편집자문위원회'를 통해 기사배열 모니터링단과 외부 전문가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 (기사배열 모니터링 백서 발간 예정)

② 서비스 측면

· 포털사 중 최초로 우편으로 받아보던 '선거 공보물'을 온라인상으로 제공

· 선관위/KBS와 함께 다양한 선거 캠페인 및 이벤트 진행, 투표 당일 투/개표 현장의 실시간 생중계 송출

· 투/개표 당일 해외에서나 볼 수 있었던 지도 기반의 실시간 개표 데이터 연동 서비스 제공



네이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서비스 운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 네이버가 말씀드립니다

2016. 03. 14. 14:58

http://naver_diary.blog.me/220654589456

번역하기 | 전용뷰어 보기

네이버가 말씀드립니다

네이버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과 공정한 플랫폼 운영'을 선거 관련 서비스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번 4·13 총선에도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선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정보' 제공

네이버는 지난 19대 총선과 동일하게 정식 후보자 등록이 공식 마감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로부터 후보자 정보를 받아, 서비스 작업을 거친 후 26일부터 후보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하므로,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는 본인참여서비스를 통해 인물정보를 수정할 수 없으며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를 통해 관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제공 순서에 따른 후보자 및 동명이인 노출

네이버는 'OO구 국회의원 후보'와 같이 선거구 단위나 후보자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선거 기간 개시일(3월 31일) 이전인 26일부터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및 동명이인의 노출 순서는 모두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순서와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후보자명 자동완성·연관검색 노출 중단

후보자 정보 개시 시점인 3월 26일부터 투표 종료 시점인 4월 13일 18시까지 후보자명에 대한 자동완성어·연관검색어는 노출이 중단됩니다. 이는 후보자 이름과 결합한 일부 자동완성어 및 연관검색어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이며 투표가 끝나면 바로 재개됩니다.

선거 관련 게시글 임시조치는 KISO, 후보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중앙선관위 지침 또는 결정 따름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선거기간 중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후보자 등에 대한 게시물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나, 불법 또는 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의 지침 또는 결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사진 7 : 네이버 선거기간 중 서비스 운영 원칙 공지>

o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에 따라 게시글 작성 이전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 → 휴대폰 인증, Ipin인증 등

- 이용자의 표현 위축의 최소화 : 기존 인증 데이터 활용 등

o 내부 게시물 처리 규정

- 기존 게시물 처리 준칙 외 KISO 정책규정 제4장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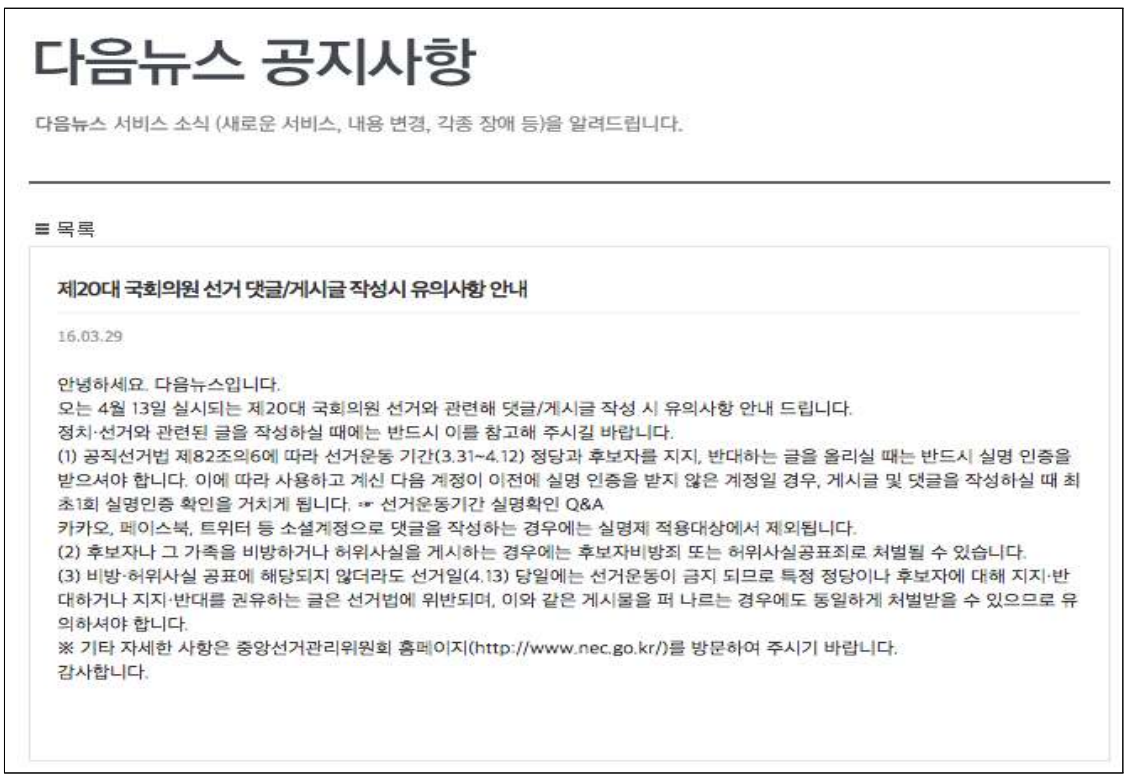
나) 카카오 (다음)

o 총선 특집 페이지 제공

- 총선과 관련한 최신 뉴스, 유권자를 위한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 건강한 여론광장 조성을 위한 서비스 준칙 제공



<사진 7 : 다음 총선 특별 페이지 >



<사진 8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댓글/게시글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



<사진 9 : 선거운동기간 실명확인 Q&A 운영>

o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에 따라 게시글 작성 이전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 → 휴대폰 인증, Ipin인증 등

- 이용자의 표현 위축의 최소화 : 기존 인증 데이터 활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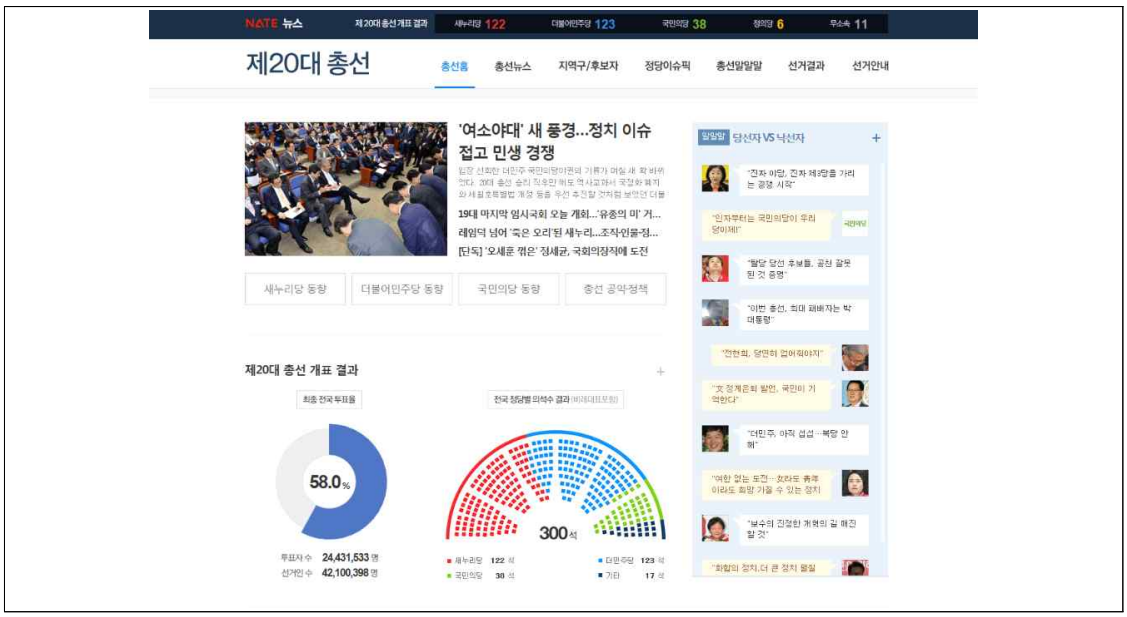
o 내부 게시물 처리 규정 적용

- 기존의 게시물 처리 준칙 외 KISO 정책규정 제4장 적용

다)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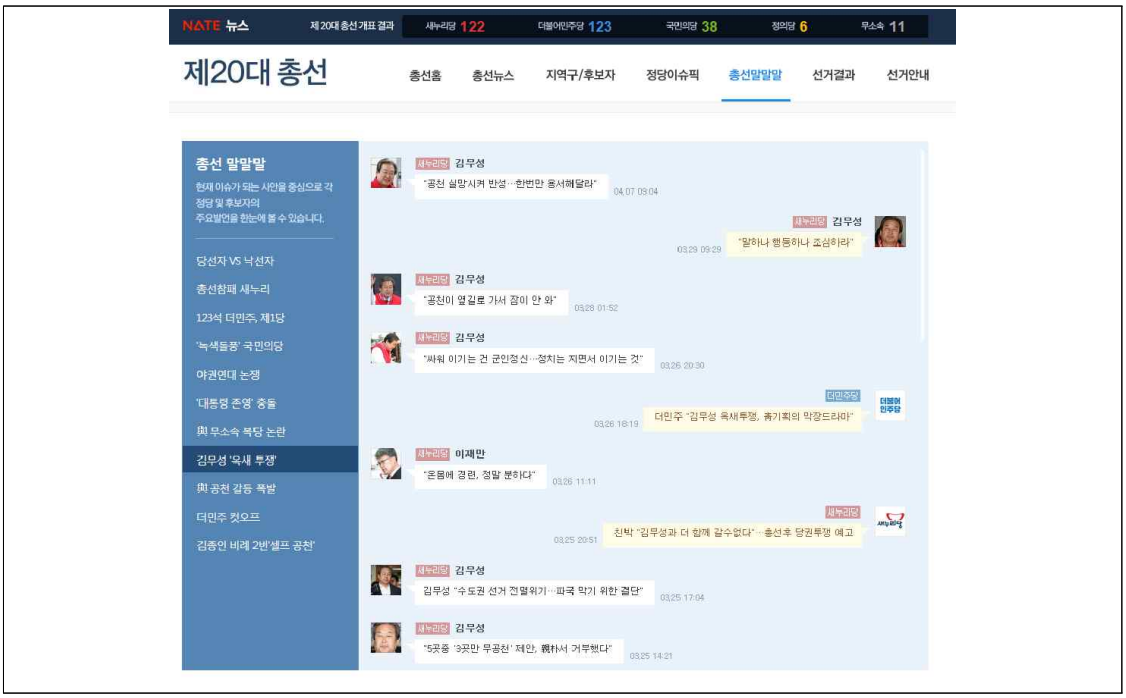
o 총선 특집 서비스 제공

- 네이트는 고객들에게 총선과 관련된 뉴스를 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별도의 총선페이지를 구성하였고, 해당 총선페이지는 홈, 총선뉴스, 지역구/후보자, 정당이슈픽, 총선 말말말, 투/개표현황 및 선거안내 등으로 구성



<사진 10: 네이트 선거 특집 페이지>

- 특징 : 네이트은 주요 이슈가 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정당, 후보자의 주요 발언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대화형식으로 구성하여 회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사진 11: 네이트 선거 말말말 페이지>

o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에 따라 게시글 작성 이전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 → 휴대폰 인증, Ipin인증 등

- 이용자의 표현 위축의 최소화 : 기존 인증 데이터 활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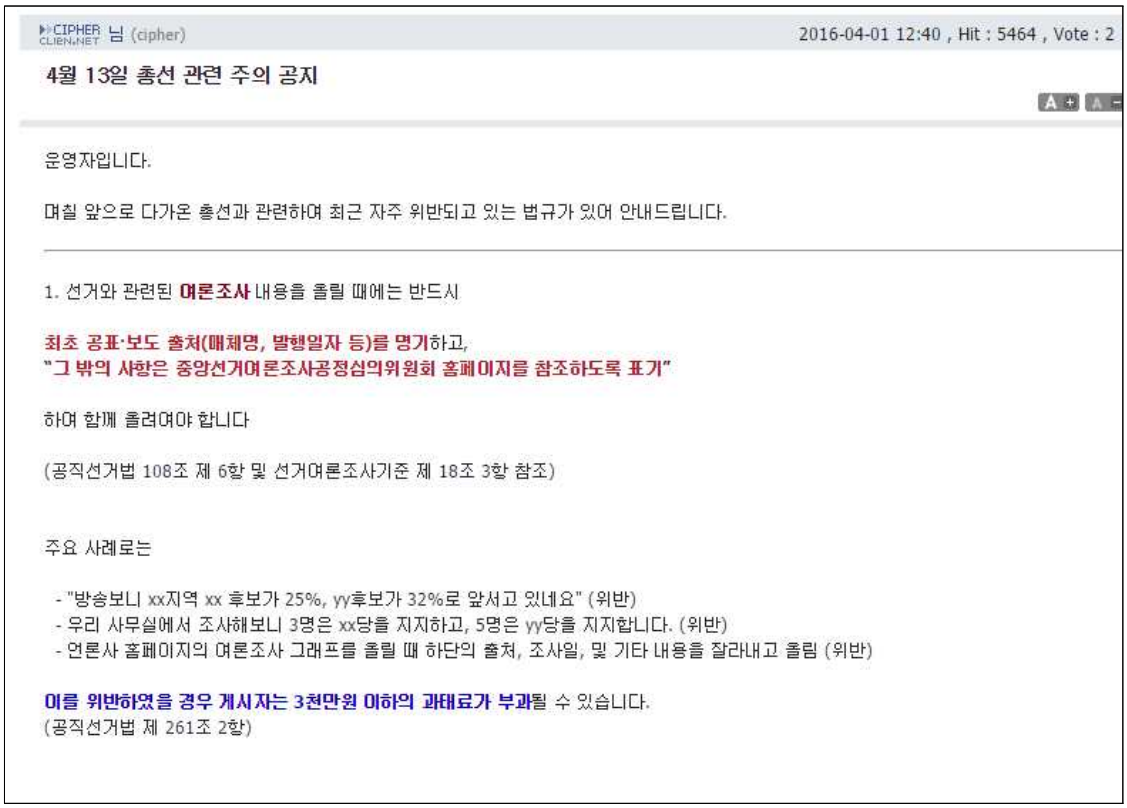
o 내부 게시물 처리 규정 변경

- 기존의 게시물 처리 준칙 외 KISO 정책규정 제4장 적용

라) 커뮤니티 사업자

o 선거 관련 공지사항 게시 : 클리앙, 오늘의 유머 등

- 선거 기간 중 금지되는 사항에 대한 이용자 안내 실시



CIPHER 님 (cipher) 2016-04-01 12:40 , Hit : 5464 , Vote : 2

4월 13일 총선 관련 주의 공지

운영자입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하여 최근 자주 위반되고 있는 법규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1.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내용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명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

하여 함께 올려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108조 제 6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 18조 3항 참조)

주요 사례로는

- "방송보니 xx지역 xx 후보가 25%, yy후보가 32%로 앞서고 있네요" (위반)
- 우리 사무실에서 조사해보니 3명은 xx당을 지지하고, 5명은 yy당을 지지합니다. (위반)
- 언론사 홈페이지의 여론조사 그래프를 올릴 때 하단의 출처, 조사일, 및 기타 내용을 잘라내고 올림 (위반)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게시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261조 2항)

<사진 12 : 클리앙 선거 공지 사항>

마)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일까지의 게시물 처리 현황

o 공직선거법 제86조의 2 및 KISO 정책규정 제18조에 따라 선거 관련 게시물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함

o 각 사업자는 선관위로부터 공문으로 요청을 받아 2016.3.24.~ 2016.4.13 기간 동안 게시물 총 2,711건 삭제

o 선관위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삭제가 이루어짐. 다만, 삭제를 요청받은 게시물이 자사의 게시물이 아닌 경우 또는,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 등의 경우 반려 처리함